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사실 및 결정 통보 규정 신설>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1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사실 및 결정 통보 규정 신설>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1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Ⅰ. 개 요 ····· 1

【김남희의원안】(국가공무원법) ····· 1

【김남희의원안】(지방공무원법) ····· 2

Ⅱ.검토의견 ·····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3

2. 검토의견 ····· 6

Ⅰ. 개　　요

【김남희의원안】(국가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0.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김남희원안】(지방공무원법)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0.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8항).

Ⅱ. 검토의견[1)]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사유로 하는 처분에 관한 소청사건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처분 대상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과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6항 신설).

구분	현 행	개 정 안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발령) ① ~ ⑤ (생 략) <신 설>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발령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따른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1)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조문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동일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구분	현 행	개 정 안
	⑥ (생 략)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지방공무원법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 ⑦ (생략) <신 설>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따른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구분	현 행	개 정 안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2. 검토의견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등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 제도임.

현행법은 제75조제2항에서 처분권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3)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청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성폭력범죄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이나 해당 소청심사에 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대상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소청심사 청구 사

실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성폭력범죄 등을 사유로 하는 징계 처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이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가 징계처분 대상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특별하게 보장하려는 것인데,

소청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감경되는 등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2]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만으로는 피해자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3]

---

2)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⑤ (생 략)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⑦~⑩ (생 략)

3)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 외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또한,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10조의2에 따르면,[4][5] 소청심사위원회는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바,[6]

피해자의 신청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로서 소청심사 청구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처분등과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심사가 청구된 경우 소청

를 사유로 하는 처분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도 소청심사 청구 사실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을 사유로 하는 성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에 한하여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출석과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사유로 하는 처분에 관한 소청사건에 있어서도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를 특별하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봄.

4) **「소청절차규정」**
제10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비위에 관한 징계처분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지방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제16조에 따라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6) 「소청절차규정」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심사청구 사실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소청심사 절차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소청심사청구 사실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여야 하는 통보 주체를 소청심사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 분쟁을 심판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소청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까지 소청심사청구 사실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기보다는, 피소청인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소청심사청구서 부본 및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부받는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피해자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징계처분대상자가 소청을 제기한 사실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일률적으로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7)]

인사혁신처는 성비위 등의 피해자에게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청 제기 사실 및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7) 현행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의 피해자 통보의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중립적인 심판기관인 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보 주체를 징계처분의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통보는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상기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사건의 성질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소청절차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소청절차에서의 피해자 진술권이 성폭력범죄와 성희롱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과 소청절차가 징계처분대상자의 구제 절차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규율 범위를 성비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을 사유로 하는 성비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의 소청제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와 소청심사위원회 출석 및 진술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에 관한 사건의 경우 조사 과

정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및 정황 증거 등 자료 확보가 용이하여 소청심사 시 피해자 진술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소청심사의 청구 및 결정 시 피소청인(임용권자)에게 통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보의 주체를 임용권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